

여성주의와 복학생의

공명

부제: 가난한 자전

여성주의 복학생운동을 위한 첫 걸음
연좌고대 총복학생협의회

여성주의와
복학생의

공명

부제: 가능한 자전

여성주의 복학생운동을 위한 첫 걸음

민족고대 총복학생협의회

1

» 발간사

우리는 (군)복학생과 여성주의의 조우를 꿈꾼다.

우리는 (군)복학생과 여성주의의 조우를 꿈꾼다

이 글은 총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작하기가 막막하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들을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사는 얘기 하지면 올 해 부산대 <월간>에서 여성들이 군 복학생에 대해 가지는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술한 논란-길코 논쟁이라 할 수 없는-들

올 한 해 부쩍 늘어난 "공개된" 성폭력 사건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진보진영내에서 뜨거운 감재(?)였던 100인위까지

술한 조건들 속에서 학생회관 3층에 자리잡은 총복학생협의회라는 작은 공간에 몰담고 있는 몇 몇 복돌이들은

이 공간에서 무언가 다른 방식의 활동이 요구받고 있음을 그 특유의 정치적 후각으로 눈치채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불분명한 성격의 "매체"의 근원이다.

사실 총복학생협의회는 최척상 군복학생을 자기 대중으로 포괄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마초적이고 군사주의-남성주의의 문화에서 컴백한 이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총복학생협의회다.

"군대"에기밖에 할 얘기 없게 만든 "휴가"기간은 뒤로 하더라도 술한 공간에서 "군대 복무경험"은 하나의 억압의 "무기"마냥

우리 "군복학생"들의 "입과 행동"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말 할 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속에서 가장 반-여성주의적일 수 있는 총복학생협의회가 자기 해체를 도모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남의 민주적 관계 "여성주의"의 일상을 구축하기 위한 작은 교두보로써 총복학생협의회가 자리매김하길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예산과 부족한 인력속에서 -결정적으로는 집행능력부족- 총복협에서는 여성해방제에 맞추어 작은 자료집이라도 내려고 하는 것이다 (했던 것이다)

이 자료집에 담겨있는 것은 별 것은 아니다 (사실 애초에 기획에 미달하는 것이다)

1) 다행히도 말이다

2) 말하자면 이젠 무슨 식순 수준의 그것도 아니거니와 "복학생"을 "우선 독자층"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복합"의 "초별적 문제의식"들을 담는 것이어야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복학생운동을 위하여 같은 멋드러진 글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자 "조건"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매체는 "여성해방제"를 맞은 하나의 "이슈페이팅"일수도 있다.

우리는 양성평등한 사회 - 삶의 원리로써 여성주의를 위하여

관계로써의 윤리의 문제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책임감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을 이 불분명한 매체(?)에 담을 까하는 고민들속에서 우선 3가지 정도로 예각화 시켰다.

기획1은 호주제이다. 기본적으로 남성들에게 있어서 호주제는 국가산점처럼 논란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첫 의제로 꼽았다. 하여 그에 관련된 글을 게재하였다.

기획2에서는 시사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현재 태러 사태와 보복전쟁과 관련된 여성주의적 시각의 제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 해서 담으려고 했다. 향후 군사주의와 여성에 대한 테마로 강연회나 토론회를 조직해보는 것도 염두해두고 있다.

기획3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세미나의 성과물을 내는 것으로 하겠다. 연구노트정도하면 적당할 듯하다.

사실 우리의 욕심은 그나마 안암에서 여남의 민주적 관계에 대한 일정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는 여성해방제에 한 일각을 이루고 싶어서 -비록 기획단과는 아무런 교감이 없었지만 - - 조악하잖나마 내게 되었다.

일단은 첫(?) 자료집으로써 그저 비록 크진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잔잔한 "파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페미니즘이면 여성학이면 지루해하고 혹은 그저 지나치게 경계만 해왔던

우리 자신에게 그저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다...

학생회관 3층 총복학생협의회실에서

3) 사실 총복학생협의회에서 내는 자료집으로써 그 성격이 온전히 들어맞는 기획이 무얼까 하는 고민속에서 구미가 당기는 주제들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한별 성폭력 사건이 가져온 논쟁지형 등에대한 평가라든가 군대 쟁점화되었던-그러나 탤레민과 이용호에 묻혀버린 여성노동권과 관련된 이슈-토픽들이 특히 그러하며 <발꽃양>상영과 관련하여서도 구미가 당기긴한다.

호주제 한 번 생각해봅시다

editor's 변 : 호주제에 대하여

솔직히 "호적 파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본인은 잘 몰랐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는 아닌 - 잠재적 가해자인 - 한국남성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에 반증은 아닐까 반문해본다.

사실 대부분 "미혼"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호적 문제는 크게 자신의 문제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웹서핑을 하던 필자는 안티 호주제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반미 반일도 아니고 웬 반-호주제라고 생각하던 - 농담이닷.

가실 그것은 호주제 반대 사이트다.

antihoju.jinbo.net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어 호주제가 전통적인 관습이 아니라 봉건적인 사고와 일제의 제도적 잔재의 융합물이라는 것과 그것이 자극히 남성 중심적인 제도라는 것 정도다.

극단적으로 심순애와 이순일이 결혼을 해서 자식 갑돌이를 낳은 후 이혼 절차를 밟아서 심순애가 갑돌이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갑돌이는 이수일의 호적에 묻혀있는 것이 현행제도이다.

여하튼 이 PAPER 적 성격-강조!!!-의

매체는 가나길 글을 실기보다는 직접 사이트 탐방을 하길 바란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호주제에 관한 쪽지 시험을 하나와

가족법의 대개개인 한 법학교수의 글을 첨부해 두겠다.

4) 북한의 경우 호주제가 "남녀 평등을 해치는 봉건적 잔재"라며 호적제도와 함께 1955년경 폐지하고 우리와 다른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제 이란기암.

맞는 답에 O표를 하세요 (중복 답 있을 수 있음)

1. 호주제는 언제 만들어졌나?

- ① 고려시대
- ② 조선시대
- ③ 일제시대
- ④ 해방 이후

2. 누가 만들었나?

- ① 공민왕
- ② 세종대왕
- ③ 일본 총독부
- ④ 이승만 대통령

3. 왜 만들었나?

- ① 족보 대신
- ② 세금
- ③ 부역
- ④ 징병
- ⑤ 인구 파악
- ⑥ 식민수탈에 필요한 ②③④⑤

4. 조선전기만 해도 남자가 처갓집에 장가들었다. 시집가라고 칙령을 내린 왕은?

- ① 숙종
- ② 연산군
- ③ 중종
- ④ 성종
- ⑤ 중종-1512년, 영조-1733년: 중기 이후부터 겨우 정착 여성의 인권 급격하락

5. 김포에 사는 홍부씨는 딸이 10명 있다. 홍부씨 사망 후 호주승계 1순위?

- ① 당연히 부인
- ② 시집간 딸
- ③ 시집 안 간 딸
- ④ 외손자

6. 그런데 홍부씨가 외도해서 낳은 아들이 나타났다. 호주승계 1순위?

- ① 그래도 부인
- ② 시집간 딸
- ③ 시집 안 간 딸
- ④ 외도해서 낳은 아들

7. 호주가던 시업자와 장남인 남편이 동시에 사망했다.

아내, 딸(하비드 졸업), 아들(1살), 분가 안 한 시동생중 호주 승계 순서는?

- ① 딸-아들-아내-분가 안 한 시동생
- ② 아내-딸-아들-분가 안 한 시동생
- ③ 아들-분가 안 한 시동생-딸-아내
- ④ 분가 안 한 시동생-아들-딸-아내



8. 심순애와 이수일이 결혼해서 이바극을 낳고 이혼했다.

심순애는 어린 이바극을 데리고 너그러운 나관대와 재혼해서 나행복을 낳았다.

심순애는 결국 이바극과 나행복 두 아이의 어머니데 두 아이 성이 달라 고민이 많다.

해결방법은?

- ① 재혼한 아버지의 상을 따를 수 있다
- ② 친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면 된다
- ③ 재혼한 아버지가 입양한다
- ④ 친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고 호적에서 자식을 내주어 재혼한 아버지가 입양하지 않는 한 이 바극을 어쩔 수 없다

9. 세계에서 호주제가 있는 유일한 나라는?

- ① 한국
- ② 중국
- ③ 북한
- ④ 호주

10. 일본이 1947년에 호주제를 없앤 이유는?

- ① 남녀평등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 ② 천황의 자손이기 때문에
- ③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 ④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정답 1-③ 2-③ 3-⑥ 4-⑤ 5-③ 6-④ 7-④ 8-④ 9-① 10-①③④

100점에서 60점까지 호주제 폐지 운동 동지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50점 조금 더 분발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라

40점 아군이여? 적군이여?

30점 이 바극은 어쩔수 없나요?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자료실도 열어서 공부합시다.

» 경희대 객원 법대 교수 김주.

호주제도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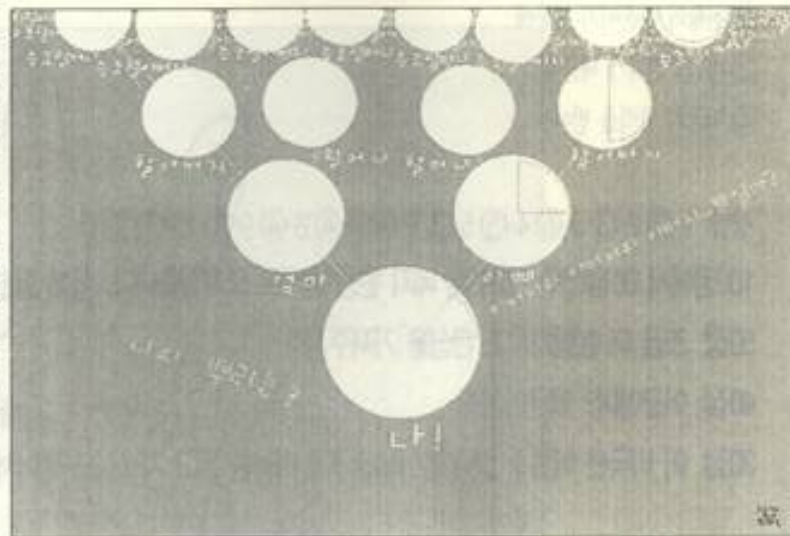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 즉 이른바 종법제를 그 기조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종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조선조 500년간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바로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호주가 그 가족원을 통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자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의 사상에 부합한다.

물론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그 근거가 되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봉건적 사회제도의 붕괴로 가장의 권력이 위축되어 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그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를 농촌에 간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봉건적 상속관계가 아직도 많이 유지되고 있다. 도시에서는 물론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게 됨으로써 봉건적 상속관계는 약해졌다고 하지만 가족원의 경제적 독립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역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존재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족제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경제구조에 있어서나 사회제도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특징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도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태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 대하여 전연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민법은 제정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종족적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기간

(기간으로 삼으면서도 종전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호주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동시에, 남자에게만 속하였던 호주상속권을 2차적으로나마 여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잠정적이 아닌 종국적인 호주상속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서로 분리 시킴으로써 사회현실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또 그러한 제도는 도리어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호주제도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 계승하였다는 미명 아래 허다한 점에서 현실과 법률사이에 심한 괴리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민법상의 호주제도에 또 하나의 모순성을 보태주고 있다.

2 호주제도 유지를 위한 제 규정에 대한 비판

민법은 1980년 일부 개정 전에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호주상속제도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분가를 금지하고 있었으며(舊 788조 1항 단서, 또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가가去家를 금지하고 있었다(舊 790조). 그리고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었으며(舊 875조, 호주상속권의 포기를 금지하고(舊 991조,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廢養)을 금지하고 있었다(舊 888조 2항. 그리고 또 호주 사망 후에도 가계를 잇기 위하여 사후양자제도와 유언양자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舊 867조, 880조, 또한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여자에게까지 호주상속권을 인정하여, 입부혼인(入夫婦)을(舊 826조 3항 단서)에 의하여 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매우 불충분한 조사자료이지만 특히 서울에 있어서 1989년 10월 서울시 중동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장남이 혼인한 집 159인 중에서 혼인한 장남이 사실상 분가한 집이 111인이 되어 무려 70%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농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도시보다는 덜하지만, 근래에는 장남의 사실상의 분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 있어서 장남의 사실상의 분가율이 높아지는 이상, 이러한 장남의 법률상의 구속은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은 제정당시 사후(死後) 양자를 구(舊) 민법대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이 사망의 경우만 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호주사망 후에 사후 양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이미 호주의 재산이 종국적으로 상속되었기 때문에 사후양자는 호주상속 이외에는 재산상속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재산이 없는 가(家)를 계승한다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사후양자선정은 무의미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민법이 제정당시부터 사후양자제도를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되었다. 더구나 입부혼인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호주상속제도 자체가 남자본위로 되어 있다거나 또 일정한 사람에게 자유의사를 억제한다는 의미에서도 헌법아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호주제도의 폐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원래의 개정안을 수정하여 호주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위에 적은 호주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 중 입부혼인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女) 호주가 가(家)를 계승할 남자의 입적으로 호주에서 가족원이 되도록 하는 규정, 실효성이 없는 호주의 부양의무규정과 거주지정규정(居所指定規定), 호주의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권규정, 처(妻)의 직계비속이 부가(夫家)에 입적할 때 부가의 호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그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이 호주의 권리·의무를 거의 모두 삭제함으로써 호주의 지위를 형해화시키고, 호주상속포기금지규정(舊 991조)을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가부장제적 요소를 많이 완화시켰다. 이제 민법상의 호주는 완전히 상징적

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가 민법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남겨 놓았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적인 단계를 거쳐서 중국에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도는 그 자체에 허다한 결함과 모순을 지니고 있다. 즉 우선 법률상의 가족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가져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적 의식을 조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호주권이란 것이 실제로 있어서 공허하기 이를 데 없고, 그 유지책도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대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렇다면 호주제도를 폐지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호주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선 우리 나라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우리나라는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은 틀림없다. 또한 실무면에서도 필요 없는 절차를 많이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의 괴리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이 혼인하면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므로, 호적사무처리도 쉬울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공동체와의 부합을 가져올 수 있다. 1990년의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호주의 작제 비속장남자는 법정분가만 금지할 뿐이고 임의 분가는 허용되므로(788조, 789조), 이 점은 상당히 해결된 셈이다. 물론 특히 농촌 같은데에 있어서는 가족, 특히 장남은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으면서 법률상은 독립한 일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의 가족과 법률상의 가족사이에 역시 괴리가 오지 않겠는가 반문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도리어 사무에 편의를 가져올지언정 실제로 있어서는 아무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없다. 왜냐하면 법률상 분가한다고 해서 자기부모와 친지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에게 소극적이거나 일종의 독립심을 주는 데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도 법률상은 평등하게 되어, 이른바 「시집에 들어간다」는 관념도 조금이라도 덜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민주화에 하나의 확고한 기초를 만들어 주고 봉건적 의식의 불식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호주상속을 폐지함으로써 특히 재산상속에 있어서 약간 곤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전의 민법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는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관습법에 따라 농지(農地)유지를 위한 방편을 쓰고 있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원래가 장남독점상속이었기 때문에 민법개정 후 공동균분상속제도로 인하여 특히 농지 상속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조선조시대에는 여자균분상속제도였었고 오늘날의 관습도 그것이 다만 농지의 영세화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제도가 약간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야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이다.

4. 맺음

이상 대체로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법률상의 규정과 현실상의 가족실태를 비교하여 가면서 논술하여 보았다. 우리가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오랜 전통적 가족제도에 일대 개혁을 준다는 의미에서 꼭 주저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봉건적 의식이 가장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농촌에서도 사실상의 분가는 성행함에 반하여, 법률상의 분가는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에서 벌써 그 결점을 드러내놓고 있는 이상, 또한 그것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봉건적 의식과 타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기획의도

군사주의와 여성주의

군사주의와 여성주의 ...

editor's 辯

군사주의와 여성주의의 접합이라는 코드는 여성운동 혹은 평화운동의 지평에 있어서 확장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기획을 고민하였으나 임박한 혹은 출현한 보복전쟁은 이 꼭지의 의도를 뒤집게 만들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전쟁 혹은 준전시상태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하겠는데 다음 글은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주의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남성들 사이의 전쟁과 폭력을 비판하는 것이 현재의 사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신들의 적들, 혹은 타자들의 문화적 이완성을 낙인찍기 위해 적들이 그들의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폭로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오랜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어온 남성들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탈레반 장군이 그간 여성들에 대한 교육 기회의 박탈, 간음한 여성들의 공개적인 총살 등을 자행했음을 폭로함으로써 미국이 자신의 적들의 이완성을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의 포르노그라피와 그 안에서의 발견되는 여성들에 대한 동물적인 취급 등을 비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미천기지의 문화적 공격을 행해오고 있다는 점은 이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일련의 전개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동안 미국은 자신의 국가태러를 다른 태러와 구별하기 위해 '민족 간 전쟁은 태러가 아니라고 말해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적"이 민족이 아닌 일개 태러집단'이므로 그 논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그러한 논리적 모순을 감추기 위해 '태러리스트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도 태러리스트 집단과 동일시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입니다. 즉 '민족이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일종의 "경합"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5)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WWomen Against War와 같은 흐름에 (www.treechal.com/kwaw) 우리는 시선을 두고자 한다.

결국 문제는 여성주의와 그 실천을 민족주의적 장치로부터 분리시켜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더 나은 민족' 더 문명화된 민족이라는 것발 하에서 민족적가부장제적 단합과 그에 필요한 여성들의 '분해'를 강요하고 또한 비로 거기에서 자신의 폭력의 일체의 정당성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여성들이 남성들의 '허락 없이' "문화 사이"에서 스스로 연대하여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 전대화된 인타내세출한 장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최원 -

관련해서 다시 신문 기사 하나를 첨부한다.

미 보복전쟁과 여성2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우리는 부시편도, 라덴편도 아니다”

미국정부는 대통령의 입을 통해 “우리 편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고 나왔다. 현재 세계 각국은 철저히 손익계산을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 전쟁에 가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아프간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발이 묶여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부시 정권은 아프간 공격을 비롯한 대대적인 전쟁준비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이 전쟁은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수시로 강조,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한다 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은 “우리는 부시의 편도 빈 라덴의 편도 될 수 없다”며 ‘부시 정권 식의 편 가르기’를 비판하고 양분법에서 벗어난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준비하라”

9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모여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과 아이들만큼 피해를 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미국의 전쟁공격과 필리핀 정부의 전쟁지시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남성

들이 그들의 무기에 의지하는 동안 평화는 현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여성들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남성들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여성·평화운동가들은 "무력사용을 통한 평화"는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7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가 주관한 국제여성인권세미나에 참석한 다카사토 스즈요 오카나와 나하시 시의회 의원은 군대가 장기 주둔해 있는 오카나와의 체험을 바탕으로 "군사기자와 공존해야 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군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촌 여성운동단체 새움터도 작년 가을 열린 여성평화아카데미에서 "남성들은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진정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전쟁이 아닌 평화 그 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불안이 여성주의자·동성애자 탓?

"화요일의 대청사는 페미니스트, 임신중절권 지지자들, 동성애자들, 이교도들 때문에 일어났다" 미국 개신교 우파교단의 제리 폴웰 목사는 9월 13일 미국기독교방송네트워크 CBN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을 세속화시키려는 이들에 대한 신의 벌이라는 것이다.

폴웰 목사는 곧 미국 여성단체,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지만 전신체제에 들어선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헤르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학자들은 전쟁이 그 준비단계에서 종결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군사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장시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공고히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쟁은 직접적으로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하고 강간하지만 그 후유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5월 '여성과 평화통일 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정현백 교수(성균관대 사회학)는 "민족의 생존이라는 거대담론 앞에서 여성과 소수집단의 인권은 무시된다"고 지적했다.

10년간 지속된 구소련과의 전쟁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아프간 여성들은 현 정권으로부터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참혹한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재미 여성학자 권인숙씨는 "제국주의에 반대한다고 자국 여성들의 몸과 행동을 제약하는 이슬람 근본주의나 사회불안과 공포를 여성주의자·동성애자 등의 탓으로 돌리는 기독교 근본주의나 마찬가지"라면서 "전쟁은 아랍지역 여성들의 삶을 더욱 통제하고 미국

사회를 급속도로 남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평화운동가 구엔 커크와 마르고 오카자와-레이도 "여성들은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아내로서, 남성을 다시 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치료하는 간호사로서,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는 술집여성으로서 형상화된다"고 분석. "군사주의는 곧 남성지배체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들 전지구적으로 연대하자" 호소도

"갈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한국여성학자협의회는 9월 1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슬람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신의 이름을 들어 전쟁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기독교성의 입장을 밝혔다. 여신협은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수많은 거룩한 전쟁을 보아왔지만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면서 "폭력극복 10년을 선언한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한 모든 교회여성들은 정의와 평화, 창조의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세기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여성단체 바우넷 재팬(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Japan)은 9월 17일 미국 보복전쟁과 일본 자위대법 수정결정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 "이미 아프간은 미국의 경제봉쇄로 4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이로 고통받고 있는데 더 많은 죽음을 가져오려 하느냐"면서 "사방세계의 삶이 소중한 만큼 비서구사회의 삶도 소중하다는 믿음이야말로 미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바우넷 재팬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다시는 전쟁의 세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지구적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전세계 여성들이 전지구적으로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조아여울 기자>

» 기획의도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노트

편집자주

학술꼭지 하나를 넣게 되었다.

무어 나름대로 여름에 내부에서 진행한 세미나의 성과물이라고 해두겠다.

여성권에 대한 우리의 '운동'이 조금더 폭넓어지길 바라며 말이다.

0. 들어가며

논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그동안 한계로 지적되었던 페미니즘이 왜 그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 논의들을 짚아보려고(1) 오늘 논의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가족임금에 대한 분석을 바렛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2) 이리가레의 인간학적 존재론적 차이에 기반한 성적차이의 윤리와 성별화된 권리의 문제와 이를 중심으로 한 여성권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3). 4번 팀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다(4) 마지막으로 여성권의 문제를 포스트-민족적 국제주의까지 나아가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왜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은 화해할 수 없었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여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던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논의가 수월할 것 같다.

우리가 존경해마지 않는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실은 성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도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복잡한 사생활은 뒤로하고서라도 혁명 후에 레닌이 여성 분세비키들이 성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쟁점들을 억압했다는 사실은 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토록 성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진보적인 사람조차도 성에 대해 이중적인 도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안에 어떤 맹목이 있었기 때문 아나 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에서는 여성의 해방이라는 것이 공백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의 문제에 부차적인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성의 해방을 근본적으로 해명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의 그 맹점은 무엇인가?

우선 『자본』의 임금개념이 "가족임금(family wage)"을 부당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는 노동자가족이나 가족임금이 전제하는 가족이데올로기라는 건 민족형태 안에서 시민이 주체로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마르크스주의는 민족형태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이후 바렛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맹점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세기말 자본주의의 새로운 양상들이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서 정치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전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생산양식과 주체와 양식의 문제설정의 접합을 통해 계급의 정치를 전회하기 위한 스페노자-마르크스주의 인권의 정치가 제기되었다. 인권의 정치의 핵심은 인간과 시민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평등과 자유의 동일성으로 확정하고 이를 '정치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로서' '평등-자유명제'라고 부른다. 바로 생산양식과 주체와 양식의 접합의 정치적 함의를 인권의 정치라는 개념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계급의 정치 당의 정치를 뛰어넘어 다양한 진보적인 정치와의 연대와 교동을 지향하는 변화된 마르크스주의로서 계급적대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차이들과 갈등들의 현실적인 존재에 대한 논의이다. 하지만 인권의 정치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주체와 양식이라는 것이 단일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정치의 보편적인 개인성 모델의 한계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주체와 양식이 다면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해방의 과정 역시도 다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면성의 수렴을 위해서는 실천과정에서의 연대와 교동, 그리고 조정의 과정 모두를 아우르는 이데올로기, 조직형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주체와 양식의 다면성과 해방과정에서의 다면성 선택적 수렴 가능성이 부재한 차별성 이것이 바로 인간학적 차이의 정치적 함의 일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해방을 이야기 할 때 그 안에는 남성노동자도, 여성노동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해방으로 절대 환원될 수 없는 여성의 해방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는 여성의 해방과 노동자의 해방을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주체와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체와 양식이 차별적이고 해방과정도 차별적이라면 근대적 정치이데올로기의 모델로서 '평등-자유 명제'와 그것이 전제하는 보편적 개인성의 모델도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권의 정치 스페노자-마르크스주의의 인간학을 넘어서는 페미니즘적인 인간학차이의 인간학으로서 이리가레의 성적차이의 윤리에 착목하게 된다.

2. 가족임금과 '가족-가계체계(family-household system)

-바렛의 논의를 중심으로

▶가족임금

우선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 했을 때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가족임금의 문제를 바렛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가자. 가족임금은 1840~40년에 공장제가 확립이 되면서 여성과 아동을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하였고 가족임금이 완성된 19세기 말에는 '노동가족'과 '의무교육'이 확립되어 여성과 아동이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 결국 이는 노동자 계급

이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노동자계급 안에 노동가족을 통하여 부르주아적 가족제도가 이식되게 되었다. 이렇게 노동가족이 수용하여 노동자계급까지 전이된 가족을 살펴보면 우선은 가족들끼리 살집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집안 일을 담당하는 부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사노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 이전에는 부인과 남편이 모두 노동을 하고 가사노동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임금노동자가 따로 존재하는 형태였는데 가족임금과 이로 인해 가족이 생겨나면서 바뀐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가족제도와 가족이데올로기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사노동이 사실은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의 가족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가족임금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목표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가족임금은 임금노동 제약 한도내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생활이 가족임금을 통해 개선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요 임금노동제도 자체가 노동자 계급이 타파해야 할 목표라고 한다면 가족임금 역시도 섀트로 타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임금은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의 격차를 정당화하고 이는 공적부조나 사회보장에서도 역시 부당한 성차별을 야기한다. 만약 여성이 이혼이라도 할 지라도 이런 임금격차나 사회보장상의 차별 자체가 여성을 극도의 빈곤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바렛이 제시하는 70년대 영국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노동자 가족 혹은 중산층 가정에서 부인이 노동해서 가족을 보조하고 그 비율 역시도 남편이 벌어들인 임금의 수준에 비교했을 때 절대로 부수입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렛은 가족임금을 부르주아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려고 만들어낸 '이중적 슬쩍'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한다.

다시금 강조하자면 임금노동제도의 철폐라는 일반적인 이유뿐 아니라 이러한 특수한 억압때문이라도 가족임금은 절대 노동자 운동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가족임금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임금개념과 결합하고 있는 가사노동자 가족의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다. 바렛은 가족임금 개념과 평등한 임금개념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런 모순은 결국 노동자 가족이라는 개념 혹은 노동자 가족이 받아들이는 가족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 80년대 이후 가족의 위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 계급은 위기에 빠진 가족의 최후의 보루로서 남아 있다는 것은 가족과 가족이데올로기가 원래 부르주아에 의해 이식된 것이라고 했을 때 역설일 수 밖에 없다.

▶ '가족가계체계(family-household system)

바렛은 가족임금분석에서 가부장제적인 친족공동체와 노동자가족을 근본적으로 구분하고 가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부장제의 개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성의 억압을 '가족가계체계(family-household system)'라는 복합체에서 포착하려고 한다. 이 복합체는 주어진 사회적 구조로서의 가계와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족이라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불균등한 복합체이다. '가계구조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수명의 사람이 소수의 성인의 임금 남편아버지에 의존하고 가족 성원 모두가 부인어머니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가족이데올로기는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 가족생활을 자연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즉 재정적으로 의존적인 부인과 어린아이가 남성가장을 통해 조직되고 상업과 국가의 공적영역을 넘어 '사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이데올로기이다.'

3. 이리가레의 성적 차이의 윤리와 성별화된 권리

봉기적 권리로서의 여성권

▶ 젠다이데올로기 비판

성적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9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이 젠더(gender)개념이다. 이리가레는 섹스/젠더를 구분하면서 섹스는 자연적인 것, 젠더는 문화적인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오히려 성은 섹스는 젠더는 완전히 자연적인 것이나 완전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기에 '장르(genre)'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은 자연적이며 문화적임을 말한다. 이것은 영어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섹스/젠더 사이의 논쟁을 지양하면서 페미니즘에 인간학적인 차원을 도입하려는 이론적이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가레가 장르(genre)를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장르(genre)의 철학적 의미인 類(generique, generic)는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르(genre) 類 일반성은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두가지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을 남성으로 환원하는 남성적인 관점에 포섭될 수 없는 여성의 독자적인 본질. 그러면서 그 독자성이 또한 인간의 類적 일반성을 갖는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성적차이를 여성과 남성의 대립으로 동일자와 타자의 대립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대립이 아닌 존재론적이고 인간학적인 차이로서 성적차이를 제기하고 또한 봉기적인 권리로 성적차이의 권리를 제기한다. 여기에서의 권리는 '봉기적'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능, 잠재력을 뜻한다. 이런 역능과 잠재력을 실현하고 억압하는 제도화된 권력이 인정하는 권리가 법적인 권리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권리는 법이전의 권리이다. 이렇게 또다른 주체화 양식을 개념화 함으로서 이리가레의 작업은 인권의 정치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성적차이와 성적 차이의 권리는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가 연대하고 교동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준다.

성적 차이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장르(genre)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정치적 함의 즉 성자체가 자연적인 동시에 문화적인 것이므로 성적 차이 역시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하나의 함의는 어떠한 성에 소속된다 즉 여성/남성의 성적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이중적인 성의 한계, 그런 성의 소속의 한계를 의미하며 이는 존재론적 차이이고 인간학적 차이이다. 남성도 여성도 유한하고 성적차이도 피차간의 유한성이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유한성 때문에 공동체적 유대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해왔던 근대적 가부장제친족 등이 아니다.

유한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유대로 결성된 예절바른 사랑의 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에 대해 비판을 요구한다. 이때 주되게 이야기 되는 사람이 헤겔인데 그는 성적 차이를 억압하고 은폐하는 가부장제 또는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탁월한 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해결은 성적 동일성, 성별화된 동일성은 가족 안에 국한된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다시 이야기 하면 가족의 바깥 바로 시민사회 또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동일성은 성이 없는 동일성이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모두 남성이라는 이야기이다. 하기에 해젤에게 권리라 애초부터 성별화 될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결국 이는 여성의 가족으로의 유배를 이론화한 것이다. 가족안에서 해젤은 성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 노동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물론 이 사랑은 공동체적 유대 즉 '형제애(brotherly)'가 아닌 여성에게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다.

이러기에는 가족안에서의 사랑, 노동으로서의 사랑이라는 해젤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가족으로 유배된 여성의 노동은 자신의 독자적 욕망을 추상하고 남성에 의해 정의되는 보편적 욕망을 실현하는 '추상적 노동'이다. 부인의 사랑은 남편과의 성교와 오르가즘, 특히 출산과 양육을 통한 '가족과 자본의 재생산'이고 반면 남편에게 사랑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노동을 보충하는 휴식일 뿐이다.

양성이 각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합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해야 한다. 진정한 문화 문명, 예정 시민성 공동체란 성적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성별화된 권리를 매개로 자연에서 문화나 문명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성별화된 권리란 각각의 성의 역능 또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남녀간의 사랑이란 친밀한 것, 자연적이고 감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예절바른 것, 문화적이고 문명적이고 시민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적 차이와 성적권리에 기반한 사랑의 공동체, 문화와 문명의 공동체는 가부장제 또는 가족을 전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봉기적 권리로서의 '여성권'

위의 논의들 속에서 우리는 민족형태에 억압되어 왔지만 오늘 복귀하고 있는 존재론적이고 인간학적인 차이와 관련된 권리, 즉 여성권에 대해 고민해 보자. 여성권은 인간의 권리를 전제하면서 그것에 포함될 수 없는 또 다른 독자적인 권리를 제기하는 것이다. 여성권 '상'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권리이다. 이런 권리는 단지 법적으로 보장되고 규정되는 이상으로 '특수하게 여성적인 위협을 고려하면서 여성의 고유한 역능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는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양도될 수도 없고 철회될 수도 없는 '시효없는' 권이다. 봉기적인 시민권인 것이다.

이러기에는 볼 때 존재론적으로 또 인간학적으로 본질적인 여성권, 즉 인간의 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만의 권리는 처녀성과 모성에 대한 권리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들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로서 규정지워진다.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존중은 가족의 자본을 재생산할 의무이고 처녀의 순결에 대한 존중은 남성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상품의 사용 가치를 보존할 의무일 뿐이다. 이에 반해 여성권으로서 처녀성과 모성에 대한 권리는 의무없는 권리, 봉기적인 시민권이다. 하지만 여성권은 이제까지의 시민권과는 달리 '자유와 평등'의 권리라기 보다는 자유의 조건으로서 '평등속에서 차이의 권리'이다. 평등한 임금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남녀 평등주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평등주의는 본래 공동체의 억압과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시민성은 민족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족형태는 항상 여성을 내부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하기에 민족형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평등의 권리는 신자유주의가 아

니더라도 항상 역전될 수 있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페미니즘적 비판

자본주의는 항상 여성의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전제로 하여 발전되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여성에 대한 착취를 더욱 고도하게 강화하는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의 만병통치약으로 처방된 신자유주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기간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은 수도 없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박탈되는 여성의 노동권 그 수준 이상은 이야기 되지 못하였다. 이담에서는 다이엔 엘슨의 전대편향을 빌려서 '페미니즘적' 관점을 가지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구조조정의 젠더 편향적 효과

1980년대 초부터 개발 도상국에서 실시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 및 기타 자원분배의 극심한 불평등, 대량실업, 공립화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분열 및 갈등을 초래하였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생계비의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평가절하, 기초적인 식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출의 삭감, 실질임금 동결등을 통해 제3세계 민중의 전반적인 수준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은 계급중립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젠더 중립적이지도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성과 아동이었다. 비록 유니세프에 의해 '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 정책이 주장되었으나 이는 여성을 아이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집단으로 가시화시켰지만 젠더차이를 포함하는 가계내에서의 구조조정 비용의 불평등한 분배 등 구조조정의 비용 배후에 있는 비대칭적인 젠더관계의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구조조정의 젠더편향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젠더관계가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사

6) 젠더 편향은 하나의 젠더로서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그리하여 하나의 젠더로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편향을 가리킨다. (Eson, 1991) 이러한 용어법은 젠더 관계적 접근법,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분화시키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관계로서 젠더관계, 개별 남성과 여성의 삶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젠더적인 차원들, 즉 성적 분업 자원들에 대한 접근 수단 및 통제력에 있어서 젠더간의 분할등을 강조하는 접근법과 관련된다. 여성의 발전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페미니즘의 이론들과 관련해서 젠더 관계적 접근법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Kaber(1994)를 참조하라.

7) '인간의 얼굴을 한 구조조정'은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주장되는 전략은 구조조정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맺고 있는 관계, 즉 이윤의 문제를 결코 제기하지 않는다. 단순히 높은 자본축적을 및 성장률의 회복만을 목표로 삼고 생산 및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둔다면 보다 높은 이윤율을 담보하는데 필수적인 구조조정의 파괴적인 측면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목표가 높은 성장률의 회복과 보다 인간적인 사회의 창출이라면 생산 및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

화내 여성의 고유한 입지를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포함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젠더 관계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제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젠더 명목적인 범주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분석범주를 구성하고자 시도한다. 이들에게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인 분석의 도구는 젠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문화 또는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과 관련된 물질적 실천 속에서 재생산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젠더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분업, 즉 생산활동과 재생산 활동의 분할을 위한 토대이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시기에 재생산 활동을 주로 담당해 온 것은 여성이었다. 또 생산활동은 대부분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에 재생산 활동은 무급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 간의 구별을 이해하는 것이 젠더 관계적 분석을 위한 출발점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보기 때문에 여성노동의 상당부분을 비가시적하게 한다. 하기에 여성이 자신의 가족의 소비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광범위한 무급의 활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기에 그 결과는 여성노동의 경제적인 비가시성이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경제의 젠더화된 성격에 대한 명시적인 인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들은 많은 시간을 사회적 재생산의 무급노동 뿐만 아니라 생산의 유급노동에 바치는 여성의 삶의 전지에서 경제적 과정을 구조화하는 변수로서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인식할 필요를 제기한다. 페미니스트들의 분석은 인적자원의 유지 및 재생산 과정에서 가계의 중요성, 가계 안락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경제를 재정의 할 필요를 강조한다.

이러한 젠더분석은 구조조정 과정에 존재하는 계급, 젠더, 인종적 편향을 지적하고 이러한 편향이 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

구조조정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작업은 크게 두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조정의 비용의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분배 즉 구조조정의 젠더 편향적 효과에 미치는 경험적 연구와 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모델의 젠더 중립성에 도전하면서 국제화폐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구조조정 접근법을 개념적으로 비판하는 연구이다.

전자는 대부분의 구조조정의 젠더 편향적 효과의 다양한 차원을 검토하면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재생산 노동 증가 및 노동강도 심화, 여성의 노동력 참가, 특히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력 참가 증가, 교육에서의 젠더편향 증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 극단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를 지적한다.

후자의 페미니스트들의 개념적 비판은 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분석 범주의 젠더 명목성을 강조한다. 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모델은 무엇보다도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거시경제학은 암묵적으로 재생산 경제가 거시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야기된 변화를 완전히 흡수할 것으로 가정한다. 여성이 재생산 경제에서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여성노동의 무제한적인 공급을 가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거시경제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 통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자원배분에서의 변화와 생산성 증가의 배후에 있는 시장에서 가계의 비용 이전을 고려하지 못한다. 구조조정 정책은 사회적 재생산의 사유화, 즉 재생산 비용의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의 이동을 초래한다. 사회적 서비스의 삭감과 사회정책의 사실상의 부재로 가족가계는 구조조정의 파괴적 효과가 대체되는 유일한 피난처로서 남게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거시경제학은 민영화, 공공부문 개혁, 공공지출 삭감의 결과로 의료 및 교육서비스와 같은 활동이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재생산 영역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간과한다. 이러한 이동은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여성화

일정한 조건하에서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시장영역에서의 노동력의 여성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노동의 사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구조조정의 영향중 하나인 수출지향적 사업부분의 확장은 제조업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산업은 주로 초민족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노동집약적이고 낮은 수준의 숙련을 요하는 노동으로서 여성은 노동자로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구조조정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더욱 격심해진 세계적 경쟁압력으로 고용주들은 값싸고 유연한 여성노동자를 선호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정책의 또다른 효과들 역시 여성의 노동력 참가를 증가시킨다.⁸⁾

구조조정은 공식부문의 노동과 비정규직, 임시적인 여타의 비공식 노동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강화시킨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고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임시적인 노동에 할당함으로써 노동력을 재편하고자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 가내 노동 또는 여타의 비공식 부문의 노동이 증가하게 되고 산업 노동 중 상당부분이 이전에는 동일한 노동을 위해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던 여성에 의해 하청형태로 가내 노동으로 수행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재편에서 여성 노동자가 겪는 특수한 경험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쟁점들이 젠더 관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관 및 국가의 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위계적인 구조의 존속은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층 노동자의 배제를 합의한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의 참여와 전통적인 노조의 재편이라는 쟁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 안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을 포함할 수 있다.

8) 구조조정 정책은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저소득 집단들 가운데에서 더 많은 가족성원이 감소된 가족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고용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여성은 노동시장으로 떠밀리게 된다.

5. 맺으며

역사적 좌파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들의 탈정치화된 재반의 권리를 옹호, 확장하기 위한 현시기 보편적인 해방이대물로서 민중민주주의를 제기하며 노동권의 확장, 평화권의 옹호, 여성권에 대한 옹호 및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선 보편적인 권리의 옹호를 위한 실천들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와 구별되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민족공동체를 포함해서 일체의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타격하는 것일 수 밖에 없기에 여성권은 평화권의 문제의식과 함께 민족주의에 대한 배격속에서 구래의 공동체적 유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진보의 정치 새로운 국제주의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소영 (1996) 『일튀세르를 위한 강의』, 공감

다니엘 엘슨 외 (1998)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페미니즘의 시각』, 공감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윤소영(1996) 『일튀세르의 한계성』, 공감

윤소영 ()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와 인간의 정치』, 문화과학사

이미경, 『마셜바렛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이론』 10호